

제2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0. 4. 23.(금) 10:0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이경자 부위원장
송도균 위 원
형태근 위 원 (4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가. 성원보고

나. 국민의례

다. 개회선언

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
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(주)에스비에스, 한국방송공사, (주)문화방송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-(2010-22-059~061)

- 김대희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피심인1[(주)에스비에스]이 피심인2(한국방송공사)와 피심인3[(주)문화방송]에게 '10~'16년 올림픽 4개 대회 및 '10~'14년 월드컵 2개 대회 중계권의 판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지연시키고, 피심인2와 피심인3이 피심인1로부터 동 중계권의 구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지연시킨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함.
- 주요내용(피심인 別 방송법령 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 내용)

① (주)에스비에스

① 방송법령 위반 내용

-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방송공사와 (주)문화방송에 대해 2010~2016년 올림픽 4개 대회 및 2010-2014년 월드컵 2개 대회 중계권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행위는 방송법 제76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3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것임.

② 시정조치 내용

- 방송법 제76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거,
 - 금지행위(정당한 사유 없이 올림픽·월드컵 중계권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)를 즉시 중지
 - ※ 상호 비방 방송 등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중지 포함
 - 2010년 월드컵 중계권은 구체적 판매 희망가격을 2010. 4. 26(월)까지 상대방[한국방송공사(주)문화방송]에게 동시에 제시하고, 2010. 4. 30(금)까지 협상을 최대한 성실하게 추진하여 그 결과를 2010. 5. 3(월)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
 - 2012~2016년 올림픽 3개 대회 및 2014년 월드컵 중계권은 2010. 8. 31(화)까지 구체적 판매 희망가격을 상대방[한국방송공사(주)문화방송]에게 동시에 제시하고, 이를 토대로 협상을 최대한 성실하게 추진하여 그 결과를 2010년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(2010. 8월부터 매월 말 1회씩 중간보고)

② 한국방송공사, (주)문화방송

① 방송법령 위반 내용

- 정당한 사유 없이 (주)에스비에스로부터 2010~2016년 올림픽 4개 대회 및 2010·

2014년 월드컵 2개 대회 중계권의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행위는 방송법 제76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3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것임.

② 시정조치 내용

- 방송법 제76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거,
 - 금지행위(정당한 사유 없이 올림픽·월드컵 중계권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)를 즉시 중지
 - ※ 상호 비방 방송 등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중지 포함
 - 2010년 월드컵 중계권은 구체적 구매 희망가격을 2010. 4. 26(월)까지 상대방[(주)에스비에스]에게 동시에 제시하고, 2010. 4. 30(금)까지 협상을 최대한 성실하게 추진하여 그 결과를 2010. 5.3(월)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
 - 2012~2016년 올림픽 3개 대회 및 2014년 월드컵 중계권은 2010. 8. 31(화)까지 구체적 구매 희망가격을 상대방[(주)에스비에스]에게 동시에 제시하고, 이를 토대로 협상을 최대한 성실하게 추진하여 그 결과를 2010년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(2010.8월부터 매월 말 1회씩 중간보고)

사. 기 타

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0년 4월 28일,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1:40)